

2.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국가직무능력표준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

나. 주요내용

- 1) 국가직무능력표준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(제32조 제2항)
- 2) 국가직무능력표준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명시화(제32조 제6항)
- 3) 국가직무능력표준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도입에 따른 직무능력완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41조의2)

다. 주요토의과제

-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32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-20%, 전문교과 80-90%로 한다. 다만,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%의 범위 내에서 구성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각 과별 교육과정(현장실습 포함)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32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-20%, 전문교과 80-90%로 한다. 다만,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%의 범위 내에서 구성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각 과별 교육과정(현장실습 포함)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각 학과(부)별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, 이하 "NCS"라 한다)에 따라서 구성·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
<p>제41조(시험)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. 다만, 학기 중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41조(시험)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. 다만, 학기 중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1조의2(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) ①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6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별도로 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
	<p>부 칙</p> <p>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41조의2는 201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.</p>

